

10.7(화)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십시오



- ▶ 2008. 10. 7(화) 배포
- ▶ 총 16쪽 (사진없음)

보도자료

- ▶ 청년고용대책과 과장 문기섭
- ▶ 청년고용대책과 서기관 김환궁
- TEL : 02-2110-7181
- FAX : 02-507-6268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유효기한 2013년까지 5년 연장

- 산학관 협력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 청년층에 종합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 오늘('08.10.7)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04년 제정되어 금년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던 법의 유효기한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고, 법제명도 정부의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 또한 개정안은 청년층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직업진로 설계와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청년층 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한 법적 토대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사업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기업·학교·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취업무대를 해외로 확대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 동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2009.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1. 법 제명의 변경

□ 개정내용

- 국가의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 명칭(「청년 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기대효과

- 비경황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적극적 의지가 여타 정책으로 연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연계 기본원칙 및 각 주체별 책무 명시(안 제3조, 제4조)

□ 개정내용

- 산·학·관 각 주체별 의무를 구체화
 - 국가 및 지자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1.19)에 따른 현행법의 관련 규정 정비
 - ※ 학교는 산업수요에 맞는 청년인력 양성, 직업진로 교육 강화, 학생들에게 직장체험 기회 확대 등 책무 수행
 - ※ 종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우수한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학교·정부간 협력체계 구축과 상호 협력의무 명시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인건비 등 경비는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을 통하여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기업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협력사업의 개발·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기대효과

-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학교·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범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 청년고용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업·학교 등 사회 구성 주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청년고용 촉진대책(8.29) 주요내용 >

- 청년인턴제·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 학교단계에서 직업진로교육 강화 및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강화 촉진
- 저학력 실업자, 니트족 등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추진('09년 1만명) 등

3. 청년층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지원 확대(안 제8조의2)

□ 개정내용

- 정부는 청년층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기업 또는 대학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지원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청년 미취업자 <u>고용확대 지원</u> <u><신 설></u>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 공) ① 정부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취업준비 및 경력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정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안 제8조의3)

□ 개정내용

- 정부는 직업상담·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직접 운영하거나, 각급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

※ 정부는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실시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 기대효과

- 국가·지자체·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층이 눈높이에 맞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년층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기여

5. 취업애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강화(안 제8조의4)

□ 개정내용

- 정부는 취업애로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직장체험·직업훈련-집중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 제공
- 참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명시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8조의4(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청년 중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애로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기대효과

- 위기 청소년·고졸이하 저학력자·장기 구직자 등 취업이 취약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종합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의 사회 안정과 취업 촉진에 기여

6. 해외인턴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실시(안 제12조)

□ 개정내용

- 정부는 산학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인턴·해외연수·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재정지원·우수 민간기관 우대조치·사후관리 등을 중점 이행
- 대학은 어학교육 등 우수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경험자를 우대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기업은 해외 수요처 발굴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 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 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 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청년 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정부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이 주관하 여 실시하는 해외인턴고용 또는 직업 능력개발훈련계획에 따라 국내대행사 등이 청년미취업자를 해외에 파견하 는 경우 여행경비와 알선에 따른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 계를 활용하여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 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 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 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 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p> <p>가. 기업등</p> <p>나. 대학등</p> <p>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 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p> <p>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 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p> <p>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 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p> <p>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 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p> <p>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 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 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 여야 한다.</p> <p>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p>

	<p>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p> <p>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p> <p>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

□ 기대효과

- 기업-대학-정부가 협력하여 해외취업·해외인턴 및 해외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을 국제적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토대가 마련되고, 청년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